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나4664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

담당변호사 장익준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17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5.

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7. 19. 선고 2021가단238202 판결

## 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6. 15. 접수 제884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(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).

나.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1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. 6. 17.에 피고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, 원고가 제출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도 명백한바,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,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하겠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, 피고가 제1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말소한 점, 그러고서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의 소송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이주현, 판사 김진철, 판사 이승원

별지

## 부동산 목록

(토지의 표시)

서울 은평구 G 대 1841.5m<sup>2</sup>

중

공유자 C의 지분 1841.5분의 77.7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서울 은평구 G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기와지붕 3층 연립주택

1층 645.56m<sup>2</sup>

2층 645.56m<sup>2</sup>

3층 645.56m<sup>2</sup>

지하실 652.76m<sup>2</sup>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1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104.12m<sup>2</sup>

부속건물 지층 I호 62.12m<sup>2</sup>. 끝.

